

지역연계지원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7.03.01

1차 개정 2022.10.04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과 지역사회의 협력(연계) 및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지원하고자 설치된 지역연계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2.10.4.>

제2조(직무) 센터는 지역사회와의 협력(연계) 및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공동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22.10.4.>

1.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발전계획 수립
2. 국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(연계) 지원
3. 지역사회와의 협력(연계) 지원
4. 지역사회와의 전공기여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
5. 사회봉사 활동 지원 <개정 2022.10.4.>
6. 기타 협력(연계) 및 센터의 일반에 관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 센터는 센터장 및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다.

- ② 센터장은 본 대학의 전임교원으로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센터장은 제2조의 센터의 직무를 총괄하며 센터를 대표한다.
- ④ 행정지원팀장은 센터장을 보좌한다.

제4조(행정지원팀) ① 센터의 행정을 지원 및 관리할 행정지원팀을 둔다.

- ② 행정지원팀의 구성, 직원배치, 업무분장 등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③ 행정지원팀은 센터장의 통솔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운영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위원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1. 센터의 규정 개정
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
3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
4. 기타 센터의 운영과 관련되는 주요 사항

⑤ 회의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센터장이 소집한다.

⑥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.

제6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국고, 교비회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7조(회계)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8조(규정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규정을 준용한다.

제9조(기타)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.